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54

발의연월일: 2021. 4. 8.

발 의 자:조승래·최종윤·맹성규

김홍걸 • 박완주 • 정필모

진선미 • 홍정민 • 고영인

최인호 · 황운하 · 이해식

안규백 · 양정숙 · 한준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성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외교부, 중소벤처기업부, 식품의약품 안전처, 특허청, 질병관리청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소관 분야에서 전문 역할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 되어 있음.

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,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·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, 제6조 제1항 후단 신설). 법률 제 호

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"을 "해양수산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 야를 총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1.・2. (생 략) | 1.•2. (현행과 같음) |
| 3. "관계중앙행정기관"이란 기 | 3 |
| 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 | |
| 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 | |
| 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 | |
| 경부, <u>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</u> | 해양수산부, 농촌진흥청, 산림 |
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| 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|
| <u>정기관</u> 을 말한다. |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|
| 제6조(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 | 제6조(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 |
| 시행 등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| 시행 등) ① |
|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| |
|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| |
|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 | |
| 별 시행계획(이하"시행계획"이 | |
| 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| |
| 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|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|
| | 장관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 |
| | 장 소관 분야를 총괄하여 시행 |
| |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 |
| | <u>다.</u>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